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2가단409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 론 종 결 2022. 8. 18.

판 결 선 고 2022. 8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,246,575원 및 그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2. 10.부터 2022. 7. 14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근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홍도

별지